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85 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김영호·이병진·박희승

문대림 • 박용갑 • 한민수

김동아 · 김문수 · 김준혁

김영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,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협의회 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 음.

이에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,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·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 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 14조의3). 법률 제 호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제2항 중 "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를 "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"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방위협의회는 지역·직장 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와 지역·직장 방위에 관한 교육·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, 방위협의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	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		
원 책임) ① (생 략)	원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	2		
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			
단위로 방위협의회를 <u>설치・운</u>	<u>설치 • 운</u>		
영하여야 하고, 그 구체적 범위	영하여야 한다.		
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			
<u> 령령으로 정한다</u> .			
<u><신 설></u>	③ 방위협의회는 지역・직장		
	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		
	의와 지역・직장 방위에 관한		
	교육·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		
	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		
	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	
	<u>로 정한다.</u>		
<u><신 설></u>	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		
	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		
	하여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		
	을 수립할 수 있고, 방위협의회		
	설치・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・		
	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	
<u>③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